

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(신·구 조문대비표)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조(등록 대상 및 요건) ①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<u>구매대행업자</u> 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.	제3조(등록 대상 및 요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매대행업자는 다음해 3월 말까지</u> ----- -----.	• 등록시기 명확화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3조의2(등록이행 사전안내) 통관지 세관장은 「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제3조제1항의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기한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작성하여 해당 구매대행업자에게 등록이행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.</u>	•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등록이행 사전안내 규정 마련
제4조(등록신청 및 심사) ① 법 제222조제1항제7호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	제4조(등록신청 및 심사)----- -----	• 불필요한 조문 정비

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(갱신)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(갱신)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우편, 전자메일,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략)

제7조(구매대행업자의 의무) ① ~ ②
(생략)

③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.

제8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 ① ~ ②
(생략)

③ 통관지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
-----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7조(구매대행업자의 의무) ① ~ 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8조(세관장의 업무감독) ① ~ 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별표 1에 따라 등록취소, 업무정지, 경

•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준용 법령 및 조문 반영

• 필요 사항 명확화 및 조문 문구 완화

④ ~ ⑤ (생략)
제13조(재검토 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<신 설>

고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재검토 기한) -----

----- 2024년
7월 1일 -----

-----.

부 칙<관세청고시 제2024-26호(2024. 7. 1.)>

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다만, 제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신 설>

(별지 제4호서식)

구매대행업자 등록 대상 사진안내문

○○○ 귀중

「관세법」 제2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귀사가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임을 안내하오니,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 사전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귀사의 직전년도 구매대행 수입통관 내역 >

☐ 직전년도(20○○년)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* :

* 물품가격 : 국내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(구매수수료 포함. 다만, 물품 가격과 구분되고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 공제 가능)

☐ 등록기한 : 20○○. 03. 31. 까지

☐ 미등록 시 :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「관세법」 제276조제3항)

< 등록신청 방법 >

☐ 제출 서류

① 신청서 :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별지 제1호 서식

② 첨부서류 :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, 국세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함)

- (법인인 경우)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기본증명서,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※ 구매대행업자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사항은 「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서식은 「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> 법령정보>행정규칙>고시」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☐ 구매대행업자 등록 신청 관련 문의

○ ○○○세관 ○○○과 담당자 ○○○ (전화번호 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○)

년 월 일

세 관 장

- 별지 제4호 서식 신설
(제3조의2 규정 반영)